

제2584호
2018.06.20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8-71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2
 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제2018-1호 : 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4

● 공 고

제2018-446호 : 공인 등록 공고 6
 제2018-455호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7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7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 및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7호(2015. 8. 10.), 제2016-44호(2016. 5. 10.) 및 제2018-34호(2018. 4. 4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92호(2015. 11. 25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니다.

2018년 6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31-6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747.0㎡ (대지 585.9㎡, 정비기반시설 161.1㎡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 시행자 : (주)성원애드피아 (대표이사 정대원)
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6

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8년 6월 12일

바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

1) 정비사업 시행면적 변경

구 분	변경전 ¹⁾	변경후	증 감	변경사유
시행면적	764.0㎡	747.0㎡	감) 17㎡	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대지면적	602.9㎡	585.9㎡	감) 17㎡	
정비기반시설	161.1㎡	161.1㎡	-	

1)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(2015.11.25.) 기준

2) 건축계획의 변경

구 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대지면적(m ²)	602.9	585.9	확정측량 및 사업시행변경인가('18.0 4.02.)에 따른 변경
건축면적(m ²)	361.47	360.90	
건폐율	59.96%	61.60%	
연면적(m ²)	5,352.81	6,011.90	
용적률	662.13%	701.76%	
층 수	지하4/지상12층	지하5/지상12층	
높 이	45.9m	변경없음	
주 용 도	숙박시설	변경없음	

3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가)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: 해당없음

나) 체비지 시설 : 해당없음

다) 보류지 시설

- 지정 : 토지 602.9m², 건물 5,352.81m²- 변경 : 토지 585.9m², 건물 6,011.90m²

4)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)

가)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(행정청에 무상귀속)(확정측량결과 반영)

시설명	변경전				변경후			비고
	지번	지 목	공부상 면적(m ²)	편입 면적(m ²)	지번	지 목	면적(m ²)	
도로 (중로2-192)	충무로4가 131-6	대	382.20	71.00	충무로4가 315-1	도	161.10	
	충무로4가 125-54	도	90.10	90.10				
계	2필지			161.10	1필지		161.10	

나)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없음

5) 분양대상자의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동 : 변경없음

사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 및 공사 완료

아. 관계서류 : 생략 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).

● 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고시 제2018 - 1호

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6.29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.)로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(1982.8.14.) 및 제472호(1984.8.9.)로 지구분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5호(2012.6.14.)호로 7-2,9-2지구 통합결정고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-56호(2014.7.9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-91호(2014.11.3.), 제2016-113호(2016.11.30.)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중구고시 제2017-2호(2017.1.4.) 관리처분인가, 중구고시 제2018-57호(2018.5.23.) 공사완료 고시, 중구고시 제2018-69호(2018.6.7.)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20일

사업시행자 케이비부동산신탁(주)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명 칭 : 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

나. 면 적 : 4,453.4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정 순 일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, 풍림빌딩 15,16층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.01.04. (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8.06.07.)

5. 공사완료 고시일 : 2018. 05. 23.

6. 이전고시 내역

가. 토지

구 분		지번	지목	면적(㎡)	비고
대지 면적	대지	회현동1가 210	대	3,696.40	
	입체적도시 계획시설(도로)			549.50	구분지상권 설정 (지상권자 : 서울시 중구청)
	입체적도시 계획시설(철도)			269.80	구분지상권 설정 (지상권자 : 서울교통공사)
도로면적		회현동1가 210-1	도	757.00	무상귀속
합계(사업시행면적)				4,453.40	

나. 건축물

구 분	동 수	층 수	대지면적	연면적(㎡)	비 고
관광숙박시설	1	지하8층~ 지상25층	1,777.74	29,107.27	
판매시설			853.47	13,974.09	
업무시설	1	지하8층~ 지상28층	1,065.19	17,440.63	
합 계	2		3,696.40	60,521.99	

7. 관련서류는 케이비부동산신탁(주) (☎02-2190-9800)의 소재지에서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446호

공인 등록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조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등록사유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추진

2. 신조 등록 공인 내역

공 인 명	인 영	규격(㎢) 및 서체	관수부서
서울특별시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인		3.6 × 3.6 한글서체	복지지원과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455호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
2. 공 고 기 간 : 2018. 6. 20. ~ 2018. 7. 4.

3. 공 고 대 상

- 자동차등록번호 : 13버29**
- 소 유 자 명 : 안*관
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8. 5. 1. ~ 5. 31.
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

4. 공 고 내 용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(02-3396-62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운행정지 자동차 현황

연번	운행정지 상태	자동차 등록번호	소유자명	소유자등록번호	사용본거지주소
1	등록	13버29**	안*관	670222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